

2

February 2019  
No.7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 리더칼럼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오종순

## 이슈진단

- 건설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의 검토 필요성
- 최근 건설업 고용동향과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



## 연구원소식

- 「2019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방안’ 세미나 개최

## 발간물안내

- 건설정책리뷰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선기원포 선즉제인’(先期遠布 先則制人)에 길이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오종순



전문 건설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올 기해년을 풀이하면, 기(己)가 땅(황금빛)을 의미하고 해(亥)가 돼지(풍요)를 의미하니 황금빛 풍요로움이 가득한 해가 됩니다. 황금돼지라고 하니 그야말로 복이 굴러들어 올 듯한 기분입니다. 진심으로 전문 건설인 가족 여러분에게 이러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올해 국내외 경제 전망은 매우 암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국내 경기는 세계 경기보다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건설투자부문은 수년째 이어온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 자명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SOC 예산 축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 악재입니다. 황금돼지의 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황금빛이 아닌 잿빛 전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엔 투지와 저력이 있습니다. 대내 경제여건의 파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더라도 대내 경제여건이 좋았던 해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투지와 저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건실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전문 건설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선기원포 선즉제인’(先期遠布 先則制人)의 정신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고 멀리 보고, 남보다 앞서 일을 도모했기에 지금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건설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2018년 말, 우리 전문건설인이 종합공사 원도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업종개편방안과 하위법령 정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선기원포 선즉제인'의 정신으로 변화된 미래 건설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우리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문 건설인 가족 여러분! 경제여건과 건설환경은 언제나 불확실했고 어려웠습니다. 황금돼지의 해, 황금빛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미래는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공동의 가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의 검토 필요성

홍성진 책임연구원 (hongsj@ricon.re.kr)

2019. 1. 17. 정부가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였는데, 혁신성장은 기업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경제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법률에는 ① 「산업융합 촉진법」,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건설산업의 융합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기존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분야에 대한 융합은 규제에 따른 한계가 있고, 산업 융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은 건설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건설산업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강점인 "시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영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태양광, 환경오염방지시설, 녹색건축물의 전자재 제조 및 설치 등이 그것이다.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최근 건설업 고용동향과 시사점

박선구 연구위원 (parksungu@ricon.re.kr)

2018년 건설업 취업자수는 203.4만명으로 전체 고용(2,682만명)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6.4%(12만명) 늘어나, 전체 고용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2018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2.3% (4.7만명)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건설업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경기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건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허가면적 등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8년 들어서는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기성 등이 감소하였다. 선행지표와 동행지표의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후행지표의 감소는 시차에 따라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감소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2018년 2분기부터 건설투자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건설 고용지표는 빠르면 2019년 상반기 늦어도 2019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점이다. 2018년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는 9만 7천명으로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는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실업률은 3.8%를 기록 중이다. 이 역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고용시장 역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지원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제조업의 업황이 부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고용시장 여건이 불안정하다. 여기에 2017년부터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해 온 건설업 고용마저 2019년부터는 감소할 가능성이 커져 고용상황이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간 고용탄력성은 대체적으로 0.3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 고용탄력성은 0.136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에 비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는 요인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있다. 즉, 고용유발 효과가 비교적 낮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 장치산업이 활황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의 활력 역시 떨어지고 있다.

고용시장의 안정은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조선, 자동차 등과 건설업 등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올해 투자와 기성 등 동행지표의 부진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산업의 경착륙을 막을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

조재용 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kr)

12월 27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업무의 도급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설업계에 직접 관련 있는 내용으로는 전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다양한 의무사항이 신설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원도급사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하였다. 하도급 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도급사가 안전,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22개 위험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되었다(제10조). 이를 통해 2018년 12월에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와 같이 하도급 노동자의 사고 장소가 22개 위험장소가 아니어서 원도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원도급사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제169조).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제167조제2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173조).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다(제67조). 2017년에 다발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되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등이 설치, 해체, 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제76조),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하였다(제82조).

산업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이며, 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업주이다. 그러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산재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좋은 재해 대비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결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 자신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일 것이다. 이러한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체와 발주자의 이해와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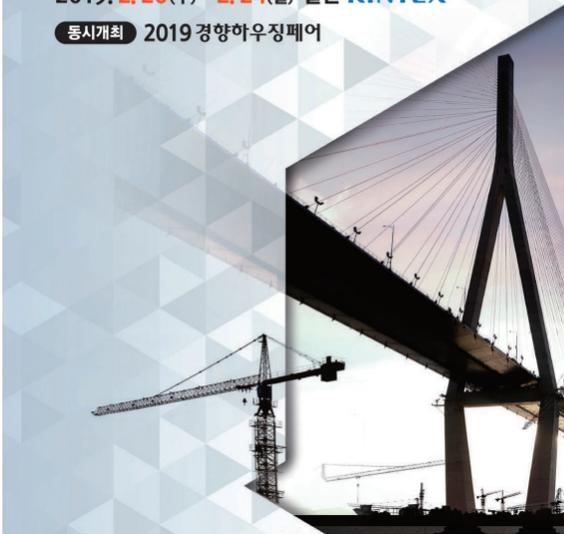
「2019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방안’ 세미나 개최

**2019 KOREA BUILD**  
**대한민국건설산업대전**

**KOREA CONSTRUCTION TECH EXPO**

2019. 2. 20(수) - 2. 24(일) 일산 KINTEX

동시개최 2019 경향하우징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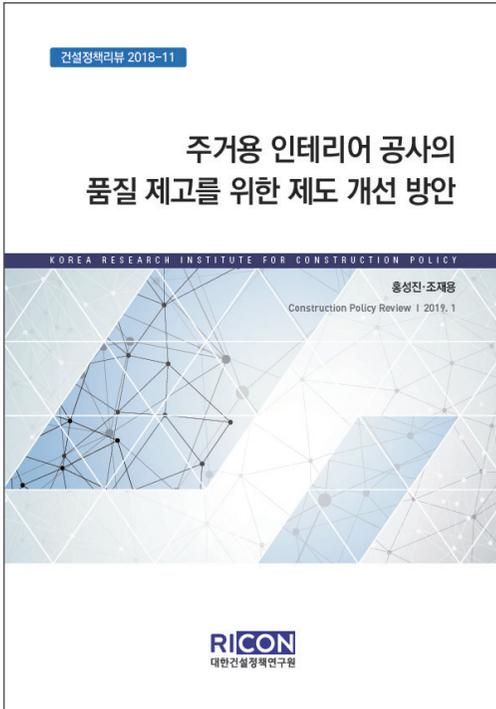


우리 연구원은 오는 2월 20일(수)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전시회에 참가하여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하도급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 확보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이 “건설공사 간접비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발제하고, 관련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하도급 공사 간접비 지급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이 제시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건설정책리뷰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노후 주택 증가, 홈퍼니싱(home furnishing)·셀프 인테리어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 건축자재 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용 인테리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업자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지연, 자재품질·시공·가감 등의 불량,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하자여부 다툼 등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연구는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 방안으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②소비자의 신고포상제 활용 등, ③건설업자의 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 확보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